

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(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50+』) 구축지원 사업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(지역특화프로젝트 『레전드50+』)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I. 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(고도화)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<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(지역특화프로젝트 『레전드50+』) 구축지원 사업 현황 >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정부지원금 (기업당, 최대)	사업기간 (최대)	예산 (규모)
고도화1	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국내 중소·중견기업	○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	2억원	9개월	330억원 (165개)
고도화1 (동일수준)			0.5억원	6개월	

II. 주요사항

사업명	구분	주요내용
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(공통)	모집 방식	○ 연 1회 모집·선정 * 既지원과제의 경우 구축종료일 이후 '24년 사업신청 가능(협약서 상 명기된 구축기간)
	기획 지원	○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DX코칭단 배정 후 과제 기획 지원(필수) * 스마트공장 구축방향 및 설계 컨설팅 등 업무 수행
	구축 지도	○ 선정과제는 기획지원 과정의 DX코칭단을 통한 구축지도* 진행(필수) *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(정부지원형)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지도예정 **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에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 납부필요(385천원)
	가점 개편	○ (신설)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(3점) ○ (폐지) ① 코로나19대응, ② 조전기자재, ③ 광주형 일자리 기업
	기타	○ 지역특화프로젝트 선정기업은 서면평가 면제

III. 사업 지원계획

□ 사업개요

-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(고도화) 지원

□ 추진체계



□ 지원내용

- IoT, 5G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 - 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 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- IoT,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□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조건	정부지원금(최대)	사업기간(최대)
고도화	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	2억원	9개월
고도화 (동일수준)	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	0.5억원	6개월

- * (중간1)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, (중간2)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
- * **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,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(최종 감리에서 수준측정)**
- * 총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나머지는 기업부담
- *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- *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
□ 신청자격

구분	지원유형	신청자격		기획지원	컨소시엄구성
		기업규모	목표수준		
도입기업	고도화	국내	-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	필수	요건검토 통과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
	고도화 (동일수준)	중소·중견 제조기업	-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		
공급기업	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관련 증빙자료 제출)				

- *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- *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
- *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**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** 가능('14년~'23년까지 모든 지원 기업)하며,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('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)
 -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(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) 확인 방법
 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(www.smart-factory.kr)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 → 사업자등록번호 조회(최근년도 수준 적용)
 -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
- *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. 단,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(예시,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가능)을 설정하여야 하며, 1회에 한해 동일목표수준으로 지원 가능
- 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예시,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- *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. 단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4년 3월 12일(화) ~ 2024년 4월 11일(목) 17시까지 신청·접수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- 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사업신청서
2	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5	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('20~'22)
6	도입기업 최근년도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 *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에서 발급
7	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확인서(필수)
8	유효기간 내의 수준확인서(수준확인 가점신청기업대상)

* 관련양식은 <https://smart-factory.kr>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
○ 선정절차 : ①요건검토 → ②기획지원 → ③기술성평가 → ④현장확인 → ⑤최종선정

구분	개요	평가기준
①요건검토	○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기획지원 대상으로 선발	○ 제출서류, 자격기준 등
②기획지원	○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 지원	○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수립 코칭 지원
③기술성평가	○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(발표)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	○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
④ 현장확인	○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/부 판정	○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
⑤ 최종선정	○ 최종 선정·후보탈락 기업 승인(중기부)	-

*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

※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, **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(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)**

○ 선정방법

① 기술성평가 : 도입기업 역량,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,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기업 역량	○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○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○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	○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○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	○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 지표간 내용 연결, 기준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	○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○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	○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	○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	○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합 계		100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①가점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, ②기술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, ③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
② 현장확인 : 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 및 가점 여부 확인

*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공정 및 설비 등 일치, 신청가점 사실여부 등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○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폐업 등)	적/부
	○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○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○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

□ 기타사항

- 지정회계법인이 과제별 RCMS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
 -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사업비 중 '기타비용'에 편성 필요

< 회계정산 수수료 >

구 분 (총사업비 규모)	표준수수료	비고
50백만원 이하	500천원	부가세 포함
200백만원 이하	700천원	
400백만원 이하	1,000천원	
400백만원 초과	1,300천원	

* 정산대상 사업비 :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

-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,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필수(민간부담금 385천원 발생)

구 분		지원방법(현장방문)	지원기간* (최대)	사업비(분담비율)	
				정부	민간
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	정부지원형	■(기획지원) 3회, (구축지도) 8회 등 11회	12개월	3,465천원 (90%)	385천원 (10%)

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
 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- *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
 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*,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**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
 - 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
 - **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"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"를 발급받은 기업

구분	내용	적용사업
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	-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	공통 (고도화1·동일수준)
유턴기업	-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	

-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
 - *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을 지원받은 공장(사업장)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

-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* 및 사후관리(시스템 안정화, AS관리 등)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(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, 고도화1 최대 4천만원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
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 *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
-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

구분	세부내용
①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, 공급기업(대표, 실무자)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 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, 사업 완료보고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및 연락처 : [붙임3 확인]
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	- 대상 : 도입기업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* 교육비는 사업비 중 '기타비용'에 100만원이내 편성 가능 *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및 연락처 : [붙임3 확인]

-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
 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 -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
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·평가항목* 예외 인정
 - *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
 - 단, 공장설립(계획)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- ※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(필수사항)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H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

□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 중인 기업
 - * 정부일반형,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(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'24년 사업신청 가능)
 - ** 단,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	

□ 가점 내용 : 항목 당 3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가점항목	평가기준 및 제출서류
스마트공장 교육	·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·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* '21년~'23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
수준확인 (* 가점 5점 부여)	· 이전년도까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아 유효기간 내인 기업 * 수준확인서 제출(유효기간 확인필요)
스마트 생태공장	· 환경부 '스마트 생태공장 사업' 선정기업 *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
산단대개조산단	·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
원전산업 협력업체	· 원전 부품·설비 분야 제조기업 * 원자력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(발급처 : 한국수력원자력(주)) 제출(단, Q, A 등급에 한함)
유탄기업	·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(산업통상자원부)
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	·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 2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와 해당 지자체(광주, 횡성, 밀양, 군산, 부산)에서 인정한 기업
뿌리기업	·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(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 산업)을 영위하는 기업
위기 지역	·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* (예시)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, 위기장후 "주의 및 심각" 단계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	·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*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(근로복지공단) 제출
청년친화형산단	·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
가점항목	평가기준 및 제출서류
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	·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	·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* '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 지역(대전 대덕구, 경북 영천시)
사업재편 승인	· 「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* 기업활력법 종합포털(https://www.oneshot.or.kr) 내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
로봇 도입	·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(전년도) 기업
FEMS 솔루션 도입	·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신청 시 FEMS 솔루션 도입기업
에너지신산업	·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·지원사업 선정(전년도) 기업
정보보호 인증	· ISMS 인증 기업,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*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
스마트제조 표준	· (붙임1)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(총 6개 표준)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)
여성기업	·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* '여성기업 확인서' 제출 필요
상생결제 우수기업	· 상생결제 활용실적 우수기업 * 상생결제 홈페이지 (www.winwinpay.or.kr) 에서 확인
군수품 제조기업	·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*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·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* 국방부 홈페이지 (https://mnd.go.kr) 내 국방정책 → 전력지원체계 → 군수품 상용화 확대 →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
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	·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*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
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」 강소단계 이상 (* 별도가점 5점부여)	·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를 통해 강소단계 이상으로 선정된 수출중소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기술성평가 시 직접 확인)
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(* 가점 5점 부여)	· 중소기업기업부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'납품대금 연동제' 시범운영 및 상시모집에 선정된 위탁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선정기업	·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과제 수행을 완료한 소공인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명문장수기업	·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 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* 명문장수 확인서 제출 필요
시그니처 농공단지 입주기업	· 사업공고일 기준, 현재 시그니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
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(신설)	·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* 별도 제출자료 없음(직접 확인) *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%인 기업(월가동일 20일이상, '21년 이후 구축기업)

IV. 문의 및 연락처

□ 담당기관 연락처

구분	기관명	연락처
공고내용 관련문의	중소벤처기업부	국번없이 1357
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044-300-0951, 0957, 0959

□ 지역별 문의처(제조혁신센터, TP)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	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2-944-6032
부산	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1-974-9155
대구	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602-1863
경북	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819-3055
포항	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4-223-2243
광주	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0202
전남	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1-729-2583
제주	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4-720-3039
경기	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00-3100
경기북부	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39-5140
인천	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2-260-0621~4, 0628
대전	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2-930-4351
충남	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1-589-0719
세종	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4-850-2154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588
강원	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3-248-5682
충북	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3-270-2813~4
전북	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3-832-6049
경남	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1811-8297

붙임 1 가점 대상 스마트제조 표준 목록

① (IEC 62541) OPC 통합 아키텍처

- 설비(하드웨어)-플랫폼-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*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

* 인터페이스(하드웨어-소프트웨어 통신, 플랫폼-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)

② (KS X 9101)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

- 기업업무에 관련된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식별을 규정한 데이터 표준

③ (IEC 63278)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

-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재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*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

*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

④ (IEC 62714)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-자동화 마크 업 언어(Automation ML)

- 생산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

* 설비 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플랫폼과 솔루션에 연동하여 가시화

⑤ (ISO 10303)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-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

-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데이터(CAD, CAM)의 데이터 파일을 교환하는 변환방식*에 대한 표준

* 이종 회사의 CAD, CAM 프로그램 사용 시 제품 데이터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표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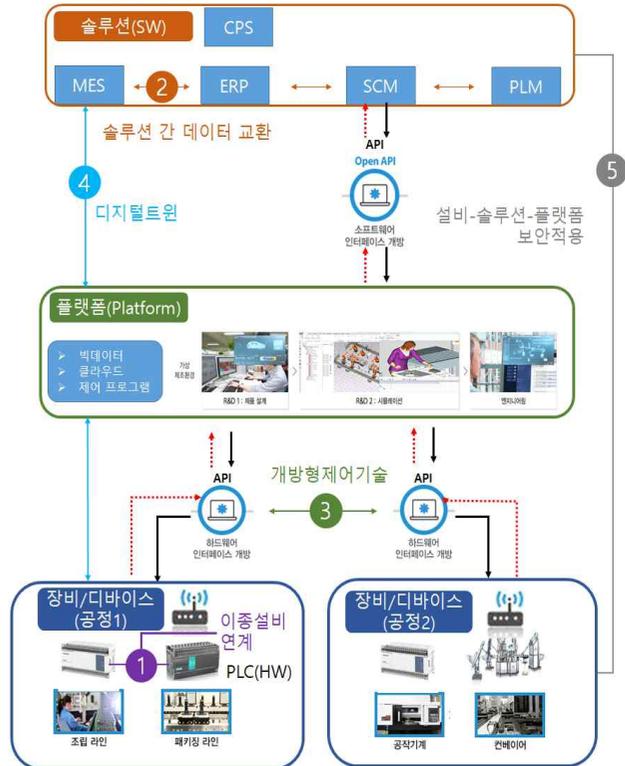
⑥ (IEC 62264)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

- 설비-플랫폼-솔루션의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를 제어*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
- * 설비의 데이터를 PLC-제어프로그램-솔루션(MES 등)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솔루션(MES 등)-제어프로그램-PLC를 제어하는 표준

<그림> 표준 적용 예시

솔루션 :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(MES, ERP, SCM, PLM, WMS, CPS 등)

플랫폼 :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 (빅데이터 분석 SW, 제어 프로그램, CAD, CAM 등)



붙임 2 중소기업 규모 기준

* 중소기업기법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천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·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붙임 3**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**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)
 - (교육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 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 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 - (교육비용) 무료 또는 유료
 - (신청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<http://sbti.kosmes.or.kr>)를 통해 신청
- ※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
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

운영과정 구분	연수원명	전화번호
집합교육 웨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	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	031-490-1472
	호남연수원 (광주)	062-250-3000
	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	053-819-5001
	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	055-548-8045
	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	041-559-9225
온라인 교육 (사업관리교육)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	031-490-1288